

# 순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정 2011. 6. 24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순천대학교 장애 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업무)** ① 센터는 학생처 소속으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4. 취학 편의 지원
5. 정보 접근 지원
6. 편의시설 설치 지원
7.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8.9.12.>

**제3조(조직)** ① 센터장은 학생처장이 겸직하고, 임기는 학생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교무과장, 학사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평가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과 센터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학생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규정 개정 및 세칙의 제·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2.>

④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순천대학교 예산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5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